간접투자기구 수시공시

■ 변경 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브라질주식 모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러시이주식 모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인디이주식 모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주식 모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코리아채권 모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브라질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인디이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주식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코리아채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콜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파워KRX100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Tomorrow Opportunity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교보악사 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탁 B-1호
- 교보악사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 교보악사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 교보악시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 변경 내용: 자산운용회사명 변경 및 투자신탁명칭 변경, 연금자투자신탁 추가 등 (투자신탁별 세부 변경 내역 참조)
- 변경 시행일: 2008년 10월 1일 (수) 부터
-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는 약관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약관 및 투자설명서는 해당 펀드의 펀드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교보악사자산운용㈜

투자신탁별 세부 변경 내역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신 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 교보악사 연금 브릭스주식 자투자신탁 1호	시명변경 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 경 및 자 투자신탁 추가
제3조(정의)	제3 조 (정의)	
1.~4.(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
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 파워러시아 주식</u> <u>모투자신탁 1호</u> 를 말한다.	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악사 파워러시아</u> <u>주식모투자신탁 1호를</u> 말한다.	명 변경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모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모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모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사명변경
회사)	화사)	에 따른
①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	명칭 변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	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경및자

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투자신탁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추가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신탁 1호	
1호	2.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	
2.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신탁 1호	
1호	3. 교보악사 연금 브릭스주식 지투자신탁 1	
<u>3. <신 설></u>	<u>호</u>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
5.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	5.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명 변경
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주식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인디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회사)	
①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신 설〉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 교보악사 연금 브릭스주식 자투자신탁 1호	사명변경 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 경 및 자 투자신탁 추가
제3조(정의)	제3 조 (정의)	
1. ~ 4. (생 략) 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 파워인디아 주식</u> <u>모투자신탁 1호</u> 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악사 파워인디아</u> 주식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투자신탁 명 변경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u>교보</u> 파워차이나주식모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시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 <신 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화사 및 수탁 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 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과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 신탁 1호 2. 교보악사 과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 신탁 1호 3. 교보악사 연금 브릭스주식 자투자신탁 1호	사명변경 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 경 및 자 투자신탁 추가
제3조(정의) 1. ~ 4. (생 략) 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 파워</u> 차이나 <u>주식</u> 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제3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악사 파워</u> 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투자신탁 명 변경

-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모투자신탁 1호

■ 변경 내용 :

■ 20 40·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모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모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	사명변경 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 경 및 자 투자신탁 추가
<u>1</u> ×	<u>신탁 1호</u>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
5.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	5.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명 변경
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채권모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ਸ਼ਿੰਟ ਹੋ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명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 ① 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 형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주부회사로 한다.	#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구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모투자신탁 1호	시명변경 에 따른 투 자신탁 명 칭 변경
제3조(정의) 1. ~ 2. (생 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 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생 략)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한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 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 "보수의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 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한 자투자신탁 1호 나.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스 추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리스 한권한 경우 무자신탁의 전환병을 지정한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내용조(정의) .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 선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 (현행과 같음)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나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악사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 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나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 나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 내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안,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투자신탁 명 변경

제37조(투자한도)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 파워브라질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6. <u>교보</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

제37조(투자하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신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u>교보악사</u>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2.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3. <u>교보악사</u>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 5. <u>교보악사</u>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6. <u>교보악사</u> 파워코라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

지다스크 트리지다이 권청 이 친구청 스 어디	이에 가치 키기치미 시 거이 가치미니 트기시다이	
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⑦수익지는 '교보악사'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후	변경시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러시이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피워러시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지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피워러시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사명변경 에 따른 투 자신탁 명 칭 변경
제3조(정의) 1. ~ 2. (생 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생 략)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수 없다. 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다. 교보 파워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다. 교보 파워리리아 차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다. 교보 파워리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단하고보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	*************************************	투자신탁 명 변경

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ㅎ

6. 수익자가 교보악사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악사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 파워러시이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6. <u>교보</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다.

2."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기준기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악사 파워러시아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u>교보악사</u>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 2. <u>교보악사</u>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3.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4. \frac{}{\text{고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circ}$
- 5. <u>교보악사</u>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 6. <u>교보악</u>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더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 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 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악사 파워코라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⑦수익자는 '교보악사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시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피워인다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화사 및 수탁화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화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인다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시명변경 에 따른 투 자신탁 명 칭 변경
제3조(정의) 1. ~ 2. (생 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u> 를 말한다 4. (생 략)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다른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수 없다.	제3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악사 파워인다아 주식</u>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화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악사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 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투자신탁 명 변경

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나.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라.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마. 교보 파워보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바.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바.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6. 수익자가 교보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 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경우, 판매회시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하다.

1.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6. <u>교보</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가.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 나.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다. 교보악사 파워인다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라.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마.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 바.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6. 수익자가 교보악시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 한 경우, 판매회시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악시파워전환형 내 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시전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투자하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투자 운용하다.

1. 교보악사 파워인다아 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신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u>교보악사</u>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호
- 2.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5
- 3.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4. <u>교보악사</u> 파워치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5.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 6. <u>교보악사</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2."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 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화을 청구할 수 없다.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기준기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⑦수익자는 '교보악사</u>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변경 전	ਸ਼ਿੰਟ <u>ਵ</u> ੇ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u>교보</u>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화사 및 수탁화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u>교보악사자산운용</u>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	시명변경 에 따른 투 자신탁 명 칭 변경
제3조(정의) 1. ~ 2. (생 략) 3.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u> 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생 략)	제3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이라 함은 <u>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u>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 명 변경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나: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라: 교보 파워하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라: 교보 파워크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바: 교보 파워크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바: 교보 파워크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6. 수익자가 교보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 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경우, 판매회시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에 동의한 것으로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신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37조(투자한도)

① 자신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운용한다.

1.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모투자신탁 1호에의 투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6. <u>교보</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② (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악사회위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 사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가. 교보악사 회위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등
- 나.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ㅎ
- 다. 교보악사 파워인다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라.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 마.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바.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6. 수익자가 교보악사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 한 경우, 판매회시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악사파워전환형 내 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u>교보악사</u>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2. <u>교보악사</u>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3. <u>교보악사</u>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 5.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 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4)~ ⑥(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 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u>교보악</u>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아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4)~ (6) (현행과 같음)

⑦수익자는 '교보악사화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시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사명변경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	에따른투
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	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시자산운용	자신탁 명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u>주식회사</u> 를 지산운용회사로 하고 <u>한국씨티은행</u> 을	칭 변경
수탁회사로 한다.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브라질주식모투자신탁 1호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주식모투자신탁 1호	
2. 교보 파워러시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2. 교보악사 파워러시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3. 교보 파워인다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3. 교보악사 파워인다이주식모투자신탁 1호	
4. 교보 파워차이나주식모투자신탁 1호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주식모투자신탁 1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	
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하여 이하에서 "교보악사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신탁의 저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	시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	
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기는 기가 이번 전에 프로 건먼지의 할 수 없어.	가.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호	
나.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오 나.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투자신탁
다.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호	명 변경
라.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고 다.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0 70
마.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프로그가 퍼워진이야 가극진원 3 시구자진국 1 호	
바.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고 라.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6. 수익자가 교보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	す。 す	
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	마.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で で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	마.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ر المار الم	
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6. 수익자가 교보악사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한 것으로 본다.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	
	한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이 수익증권의 황매와 교보악사과워전환형 내	
	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3.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그 프로 기타기 타기 기반인 6시 [시년기 1조	· <u>~~~~</u> 기가기 기 기간인 6 시 [시킨기 1호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6.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 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6. 교보악사 파워코라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⑦수익자는 '교보악사과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 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피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명 변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자신탁운용주	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명변경
식회시를 지산운용회시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수탁	중무사한다니 시구사한다므로서 <u>교로구시자한</u> 중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을	에따른투
회사로 한다.	수탁회사로 한다.	자신탁 명
– .		칭 변경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 파워코리아채권모투자신탁 1호	1. 교보악사 파워코라이채권모투자신탁 1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1.~2.(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	3. "투자신탁"이라 함은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	
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를 말한다	
4.(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5. "전환"이라 함은 수익자의 요청으로 판매회사가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칭	다음 각목의 투자신탁(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통	
하여 이하에서 "교보파워전환형"이라 한다) 중에서	칭하여 이하에서 "교보악사파워전환형"이라 한다)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중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서 "투자신	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하에	
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매회시는 수	서 "투자신탁의 전환"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 판	
익자가 전화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클래스와	매회시는 수익자가 전환 신청한 투자신탁의 수익증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여야 하며, 다	권 클래스와 동일한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하	
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여야 하며, 다른 수익증권 클래스로 전환처리 할 수	
	없다.	
가.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가.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나.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호	
다.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고 나.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투자신탁
라.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1호	명 변경
마.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바.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다. 교로구자 퍼뮤틴어가 구극산된 8 시구자인국 1호	
6. 수익자가 교보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투자	고. 라.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 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정한	1호 마.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경우, 판매회시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1호 - 이 크리아의 코이크리아 카카카취취 카드라이다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바.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파워전환형 내의 다른 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한	6. 수익자가 교보악사파워전환형에 속하는 제5호의	
것으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할 당시에 투자신탁의 전환 방법을 지	
	정한 경우, 판매회사는 해당 수익자가 지정한 방법	
	에 따라 투자신탁의 전환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수익증권의 환매와 교보악사파워전환	
	형 내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하	
	여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수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하나의	
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권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으로 다른 수익증	
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권을 매수(이하 "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1.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2.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u>ই</u>	
3. 교보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2. 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지투자신탁 1	

4.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5. 교보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 6. <u>교보</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교보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브릭스주 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 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 파워인다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4)~ (6)(생략)

⑦수익자는 '교보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른 투자신 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호

3. 교보악사 파워인디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

4. 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5. <u>교보악사</u>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

6. <u>교보악사</u>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지투자신탁 1 호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교보악사 파워러시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 "교보악사 파워브릭스 주식전환형 자투자 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 에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10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교보악사 파워인다아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 및"교보악사 파워차이나 주식전환형 자투자신탁 1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9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3. "교보악사 파워코리아 채권전환형 자투자신탁 1 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제4영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⑥(현행과 같음)

⑦수익자는 '교보악사파워전환형'투자신탁의 수익 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다 른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의 전환을 청구할 수 없 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탁 B-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의 명칭 교보 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탁 B-1 호	투자신탁의 명칭 교보악사 Tomorrow 우랑채권 모투자신탁 B-1호	사명 변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2.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3.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5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4. 〈신 설〉 5. 〈신 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2.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3. 교보에어 제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4. 교보악사 연금 채권자투자신탁 1호 5. 교보악사 연금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1호	자투자신 탁 <i>추</i> 가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설정할 수 있는 총좌수 변경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자산운용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 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자산운용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시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매기준 시간 변 경

지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 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 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 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 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	
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	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	
제4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자구 수 정

- 교보악시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명	투자신탁명	투자신탁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ETF30 채권	교보악시Morningstar 글로벌부동신ETF30	명 변경
혼합 자투자신탁 B-1호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회사)	화사)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① 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	사명변경
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사자산운용주식회시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에 따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투자신탁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명칭 변
1.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	1. 교보악사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경
간접 모투자신탁 B-1호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2. 교보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	2. 교보악사Tomorrow 우량채권 모투	
<u>탁B-1호</u>	자신탁B-1호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의 명칭 교보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 자신탁 B-1호	투자신탁의 명칭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사명 변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화사 및 수탁 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6.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7.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8.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5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9. 〈신 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6.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지투자신탁 B-1호 7.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3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8. 교보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ETF50 채권혼합 자투자신탁 B-1호 9. 교보악사 연금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자투자신 탁 추가 및 명칭 변경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수익증권 설정가능 총좌수 변경
제4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자구수 정

- 교보악사 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자신탁 B-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사명 변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자투	교보악시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경에 따
자신탁 B-1호	자투자신탁 B-1호	른투자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투 자신탁운용주식회시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2. 교보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①이 투자신탁은 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시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교보악사Morningstar 글로벌부동산 재간접 모투자신탁 B-1호 2. 교보악사Tomorrow 우량채권 모투자신	신탁 명 칭 변경
<u>B-1호</u>	<u>탁B-1호</u>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 익증권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8조(신탁원본의 기액 및 수익증권의 총죄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 익증권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설정할 수 있는 총죄수 변경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변경 내용 :

가. 투자신탁명칭 및 자산운용회사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교보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 명칭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 명칭 변
7112 - 1000 1112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회사)	화사)	지산운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회사사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악사자산운용주식회시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명 변경
㈜하나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하나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나. 판매회사 추가 : IBK투지증권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콜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교보 콜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 명칭 교보악사 콜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투자신탁 명칭 변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자산운용
회사)	회사)	회사사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명 변경
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	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 교보악사 KRX100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투자신탁 명칭	투자신탁
교보 KRX100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교보악사 KRX100인덱스 파생상품투자신탁	명칭 변
	<u>1ই</u>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화사)	화사)	자산운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회사사
<u>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u> 를 자산운용회사로 하	<u>악사자산운용주식회사</u> 를 자산운용회사로 하	명 변경
고 ㈜하나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고 ㈜하나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 변경투자신탁명

– 교보악사 Tomorrow Opportunity 파생상품투자신탁 H-1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투자신탁 명칭	투자신탁
교보 Tomorrow Opportunity 파생상품투자	교보악사 Tomorrow Opportunity 파생상품	명칭 변
신탁 H-1호	투자신탁 H-1호	경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신운용회사 및 수탁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	
화사)	화사)	자산운용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교보	회사사
<u>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u> 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u>악사자산운용주식회시</u> 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명 변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